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90호 관련)

2021. 12.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08~18:5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원장

(의결 제272호, 제278호~제289호)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90호『㈜**에이프로젠메디신 등 2개사 주식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는 BW발행 청약할 때, 납입할 때, 납입 후에도 저희가 조합원 수를 확인했었는데 ▲▲▲▲▲▲▲▲▲▲▲조합이 회사 모르게 조합원의 수를 늘렸기 때문에 나중에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50인이 넘었다고 금감원에서 판단하셨는데 회사는 조합원 수가 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음.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시면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그 위반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법적인 수단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 **(위원)** 본 건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은 ▲▲▲▲▲▲▲▲▲▲조합의 조합원 수임. ▲▲▲▲▲▲▲▲▲▲▲▲조합의 투자조합규약을 보면 제정이 2016년 2월26일에 결성총회가 이루어졌고 그때 조합원의 수가 32인이었음. 그런데 지금 금감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회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투자조합규약 버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똑같이 개정이 2017년 11월8일에 임시총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합원의 수가 36인이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합원의 수는 6인으로 되어 있음.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림.

▶ **(진술인)** 저희가 처음 ㈜○○○○○○○○○ 청약을 할 때 실제 조합원 규약에 있는 명부를 확인했음. 그때 분명히 6인이었고, 그다음에 ㈜◎◎◎◎ 납입할 때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도 6인이었음. 조합이 회사 측에 제출한 자료는 항상 6인이었고 거기에 변화가 없었는데 저희한테 조합원 규약을 제출한 이후부터 금감원 조사 사이에 조합이 조합원 규약을 갱신하지 않았나 싶음.

○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납입일이나 납입한 후에 확인하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명부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 **(진술인)** 청약하는 날 조합원 명부를 각 조합들이 가지고 왔었음. 아시겠지만 7개 조합이 전부 청약을 한 것인데 청약일에 7개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와서 회사 측이 조합원 명부를 일일이 확인했음. 그다음에 ㈜◎◎◎◎ 납입일에는 구두로 확인을 했음. 그다음에 납입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회사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합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조합원 규약과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음. 그래서 7개 조합이 그 조합원 명부와 조합규약을 제출했고 거기에도 여전히 6명이었음.

○ **(위원)** 그러면 청약일에도 투자조합규약을 받은 것인지?

▶ **(진술인)** 그날은 받지 않고 열람만 했음.

○ **(위원)** 그러면 다른 조합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 청약일에 누가 이 문서를 가지고 오셨는지?

▶ **(진술인)** 그 인수계약하는 날에 이 청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원 대표들이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이 사모냐 공모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가 모인 자리에서 조합원의 수와 조합원 명부를 다 점검했었음.

○ **(위원)** ▲▲▲▲▲▲▲▲▲▲▲▲조합은 청약일에 대표로 어느 분이 오셨는지?

▶ **(진술인)**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의 대표가 오지 않았을까 싶음.

○ **(위원)** 납입일에는 구두로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수를 누구에게 구두로 확인하셨는지?

▶ **(진술인)** ▶▶▶를 통해서 확인했음.

○ **(위원)** 그러면 ▶▶▶가 나머지 6개 조합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인지?

▶ **(진술인)** 그것은 없음. 저희가 조합원 명단에 변동이 있느냐고 납입일에 물어봤을 때 없다고 답변을 받았음. 그다음 납입한 후에,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받은 7개 조합규약에도 그 명부에는 변동이 없었음.

○ **(위원)** 진술인께서는 사전에 50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셨다는 것인지?

▶ **(진술인)** 충분히 알고 있음.

○ **(위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는지?

▶ **(진술인)** 그렇기 때문에 그날 청약일에 저희가 일일이 직원을 시켜서 조합원의 수를 세고 그랬던 것임.

○ **(위원)** 청약일에는 서류 열람, 납입일에는 구두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이 되었든 기록이나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닌지?

▶ **(진술인)** 저희가 투자조합원에게서 투자를 받을 때 조합규약이나 이런 것을 따로 제출 받은 적이 없음. 이렇게 조합원 수가 달라져서 문제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복사를 해 놨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는 이것이 이렇게까지 문제될 줄은 몰랐음.

○ **(위원)** 열람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열람하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청약 관련 서류에 남겨 놓거나 한 것이 없으신지?

▶ **(진술인)**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이 있음.

○ **(위원장)** 진술인은 퇴장 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보고자)** 저희가 ♣♣♣ 대표이사를 상대로 문답조사를 진행한 조사 全과정에서의 말씀, 자조심에서 의견진술 할 때의 말씀, 그다음에 오늘 증선위에 참석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본인한테 또는 본인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말씀을 바꿔나가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림.

○ **(위원)** 36인과 6인짜리, 제가 두 개를 자세히 비교를 해보니까 6인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36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씨임.

- **(보고자)** ♥♥♥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 대표조합원이 ♠♠♠♠♠♠♠♠♠♠♠♠㈜이고,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

○ **(위원)** 아까 진술인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을 탐문해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제공이 되고 확인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닌지?

- **(보고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관련되었던 중요 인물들을 조사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쟁점이었던 사항은 투자조건에 관한 것이었지 이것이 공모규제에 해당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들은 일체 확인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당시 상황을 최근에 저희가 확인하였음.

ㅇ **(위원)** ▶▶▶씨 이외에 다른 진술은 확보된 것이 없는지?

- **(보고자)** ▶▶▶씨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인들, 조금 전에 얘기가 되었던 ♥♥♥씨도 저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접촉을 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음.

ㅇ **(위원)** 혹시 ◉◉◉씨하고는 답변을 해보셨는지?

- **(보고자)**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조치를 받은 조치전력자가 아니고 일반조합원이었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음.

ㅇ **(위원)** ♣♣♣ 대표이사의 주장대로 조합이 회사 측을 속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금감원 판단대로 50인을 초과하는 것이 맞는다면 처벌은 되는 것이고 동기를 감경하는 정도인지?

- **(보고자)** 저희는 신고서 제출 건과 관련하여 '고의'로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중과실'로 판단해서 과징금을 산정한 것임.

○ **(위원)** ♣♣♣ 대표의 진술을 수용한다면 '중과실'을 '과실'로 내린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섭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오랫동안 부과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서 '중과실'로 본 내용이 최저 기준임. 다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안할 수 있다.'이 조항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신다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 첫 번째 진술인이 재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위원)** 진술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청약일에 조합 대표로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확인을 하셔서 당일 조합원 숫자를 6인으로 확인했다는 부분과 열람을 했다는 부분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자필확인서, 녹취록 등 형식에 상관없이 최대한 수집하셔서 다음 증선위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 **(진술인)** 알겠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재 문제된 구주 매출 당시 상황을 보면 회사로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

킬 유인이 전혀 없었고 매수자 측에게 먼저 청약을 한 사실 또한 없음. 회사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조합대표자이자 일종의 중개역할을 한 ▶▶▶에게 조합원 인원수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음. 그럼에도 처분예정인 과징금 6억 원은 사업실적이 전무한 현재 회사의 사정을 고려할 때 매우 과중한 금액이라고 생각함. 부디,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림.

ㅇ **(위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 조합의 조합원 수인데 ▲▲▲▲▲▲▲▲▲▲▲▲조합을 포함해서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약일, 납입일, 납입 후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일자마다 회사 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림.

▶ **(진술인)** 거래협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약체결일과 계약종결일 사이에 상대방 투자조합의 조합원 구성원의 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며칠인지까지는 특정이 안 됩니다마는 계약체결하기 직전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조합원의 총수가 몇 명인지는 거래상대방이었던 ▶▶▶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것은 분명히 맞는다고 함. 다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직접 확인했느냐, 또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는 직접적인 확인을 못한 것 같음. 실질적으로 그 거래상대방인 조합에서 자기 조합원의 명단과 숫자를 명확하게 다 공개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간청 드림.

○ **(위원)** 결국 확인한 내용은 ▶▶▶ 회계사를 통한 구두 확인 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파악하면 되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증권신고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합원 수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이 건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 **(진술인)** 실제 투자조합이 거래상대방으로 나타났을 때 매도인 측에서 투자조합의 정확한 조합규약을 받거나 또는 조합원 명부를 받거나 또는 실제 거래 통장상에 입금한 조합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의 없다고 보임.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거래(Deal)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아마 거의 대부분 49명인지의 여부도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신경을 쓴다면 49명이 맞는지 문의하고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고 그것을 "규약을 내 놓아라", 또는 "조합원 명부를 내 놓아라" 또는 입금자와 조합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상당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조합원 투자금액이라

든지, 투자금액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약의 진실성에 관한 확인을 각각의 조합원에 대해 최대한 추가적으로 하신 후에 그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사전에 매도인 측에서 조합원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법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듦. 그런 법리적인 추가검토에 대해서는 증선위에서 고민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